

이해상충방지정책

KTB PE는 2018년 8월 13일부로 KTB PE Stewardship Code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해상충방지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합니다.

1. 기본원칙

- 1) 투자자의 이익을 KTB PE와 KTB PE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도록 합니다.
- 2) 모든 투자자의 이익은 동등하게 다루어집니다.
- 3) KTB PE의 임직원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회사나 투자자를 상대로 자신의 이익 또는 보상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 4) KTB PE의 임직원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합니다.

2. 이해상충의 관리조직

KTB PE는 준법감시인과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이해상충의 발생가능성과 통제방안을 관리합니다.

3. 이해상충의 관리 프로세스

1) Deal 개시

임직원들은 이해상충발생이 가능한 사실에 대해 직속 상사 또는 준법감시인에게 공개합니다. 위 공개는 임직원 스스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는 즉시, 그리고 가능한 한 해당 임직원이 문제의 행위에 연루되기 전에 이루어집니다.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을 보고 받은 자 또는 행위에 연루 가능성이 있는 자는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준법감시인과 협의 후 그 확인을 득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이해상충의 검토

준법감시인은 이해상충의 문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및 평가 후 업무담당자에게 의견을 제시하며, 업무담당자는 준법감시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합니다.

준법감시인은 이해상충행위와 관련 중대한 의사결정의 필요가 있는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승인을 득하여 업무를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3) Disclosure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리고 내부 통제기준에 따라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거래를 실행합니다.

4) Avoid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래를 금지합니다.

또한 KTB PE 임직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비속이 당해 직무수행에 이해관계가 있어 직무활동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5) KTB PE와 PEF와의 거래

KTB PE와 PEF 간 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KTB PE 이사회의 승인은 물론 PEF에 출자한 모든 사원의 동의를 득한 후 거래를 실행합니다.

6) Monitoring

거래 종료 후 이해상충의 발생 여부 및 통제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를 Compliance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합니다.

4. 거래주의 목록

KTB PE는 아래의 사항들을 거래주의목록으로 지정하여 반기 1회 소속 임직원들에게 공지하며, 임직원들은 자기의 계산으로 거래주의목록 사항을 거래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한 뒤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법감시인의 사후조치 요구사항에 따릅니다.

※ 거래주의 목록

- 1) KTB PE 또는 PEF의 계산으로 주식,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 구체화된 경우
- 2) KTB PE 또는 PEF의 계산으로 매입한 주식,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 3) KTB PE가 해당 회사의 M&A 관련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4) 기타 업무와 관련 매매거래 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금지행위

KTB PE 및 KTB PE의 임직원들은 이해상충과 관련한 아래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1) 업무관련자(업무상 거래하는 개인이나 업체)로부터 금전, 물품, 상품권 등 선물, 접대 및 뇌물 또는 리베이트를 제공 받는 행위
- 2) 투자대상회사의 주식, 채권을 투자자의 양해 없이 취득하는 행위
- 3) 투자대상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4) 업무집행사원의 지위를 남용하여 과도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투자대상회사와 거래하는 행위
- 5) 합리적 사유 없이 PEF 및 투자자를 차별 취급하여 특정 PEF 및 투자자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는 행위
- 6) 현재 또는 잠재적 경쟁업체로부터 수수료, 커미션 또는 기타 호의를 받은 후 고의로 PEF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
- 7) PEF와 거래상대방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8) 기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PEF의 이익을 제한하는 행위